

영등포구의회
제21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10. 22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4호로 2018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사업 활성화, 일자리업무 인력 보강 등 증가하는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개정(안 제2조)

- ‘1,405’을 ‘1,412’로 개정(증 7명)
- 집행기관의 정원 : ‘1,378’을 ‘1,385’로 개정(증 7명)

나.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(별표 3)

- 총계 ‘1,405’을 ‘1,412’로 개정(증 7명)
- 일반직 총계 ‘1,400’을 ‘1,407’로 개정(증 7명)
- 일반직 6급 이하 ‘1,324’를 ‘1,331’로 개정(증 7명)

기관별	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직급별						
총 계		1,412	1,412			
정무직		1	1			
일반직 계		1,407	1,407			
일	3급	1	1	-	-	-
	4급	8	6	1	1	-
반	5급	65	33	2	12	18
	6급 이하	1,331	1,331			
직	전문경력관	2	2			
	별정직 계	4	4			
6급 상당 이하		4	4			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일반직 신규 임용 인건비(9급 3호봉 기준)

1) 소요예산액

(단위:천원)

합계	국비	시비	구비	비고
251,579	-	12,825	238,754	

2) 세부내역

○ 채용인원:7명(7급 1명, 9급 6명)

(단위:천원)

구 분	금 액	산 출 근 거
합 계	251,579	
기본급 (봉급)	139,641	7급, 9급은 각 직급 3호봉 기준

직급보조비	10,680	월 직급보조비(7급 140천원, 9급 125천원)
국민건강 보험금	6,415	보수월액의 3.06% 부담
연금 부담금 등	34,974	연금부담금, 장기요양보험료, 퇴직수당부담금, 재해보상부담금
수 당	59,869	- 가족수당 3,360천원 - 시간외근무수당 28,418천원 - 정액급식비 10,920천원 - 명절휴가비 13,964천원 - 연가보상비 2,007천원 - 기술업무수당 1,200천원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증원 하려는 것으로서,

○ 개정안의 주요내용(직급별 세부 증원 내용 참조)을 살펴보면,

※ **직급별 세부 증원내용**

직급	증원	증원 필요성	
계	7명		
6급 이하	7명	국가 정책	○ 임대사업자 사업 : 2명 ○ 일자리 사업 : 1명 ○ 아동보호 사업 : 1명 ○ 지하안전관리 사업 : 2명
		행정 수요	○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사업 : 1명

- 안 제2조, 본문의 개정사항은 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현재 1,405명에서 1,412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기준인건비 1,244억원 내에서 7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,
- 안 제4조 “별표3”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안 제2조에서의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서, 일반직의 6급이하 7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.
- 이는, 정부의 정책추진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사업 2명, 지하안전관리사업 2명, 일자리사업1명, 아동보호사업1명, 납세자보호사업 1명 등 총 7명을 신규 증원하는 것으로 보임.
- 위와 관련하여, 2018년도 우리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,244억원이고, 예산 편성액은 1,194억원임을 감안할때,

신규 증원되는 7명의 인건비는 연간 2억 5,100만원으로, 향후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증가 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(※ '2018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현황' 참조)

【 불 임 】

2018년도 기준인건비 및 예산편성 현황

□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: 124,399,020천원

□ 영등포구 예산편성금액 : 119,423,135천원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
총 계	119,423,135
101 인건비	94,626,774
101-01 보수	75,601,986
101-02 기타직보수	6,813,056
101-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	12,211,732
204 직무수행경비	2,686,615
204-02 직급보조비	2,686,615
303 포상금	4,181,393
303-02 성과상여금	4,181,393
304 연금부담금등	17,928,353
304-01 연금부담금	15,100,190
304-02 국민건강보험금	2,828,163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4조(기준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,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(이하 "자율범위"라 한다)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,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36조(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.